

# 붙임4

# 예산편성 기준표

\* 행정안전부,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

비목	기 준	사용한도액		비 고
		기본1시간	초과매시간	
인건비 강사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.차관(급), 대학총장(급)</li> <li>• 국회의원, 광역자치단체장</li> <li>•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장</li> </ul>	300,000원	200,000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기업 회장 및 전직 공기업 대표</li> <li>•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인,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</li> <li>•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(도에 사전협의)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의 교수 / 판·검사 /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, 교감</li> <li>•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•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</li> </ul>	250,000원	120,000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변호사, 의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등 5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•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</li> <li>•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인,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</li> <li>•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및 5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•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</li> </ul>	150,000원	80,000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</li> <li>•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, 원어민 어학 강사</li> <li>•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인,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</li> <li>•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어, 전산 등 강사</li> <li>•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강사</li> <li>•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</li> </ul>	100,000원	50,000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체육·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• 외국어·전산 등 학원강사</li> <li>•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</li> </ul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조 강사</li> </ul>	70,000원	40,000원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수인 공연 (음악 및 공연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연자 개별별 송금 원칙, 다만 공연 기획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인 이하 50만원</li> <li>- 6~10인 70만원</li> <li>- 11인 이상 90만원</li> </ul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</li> <li>※ 여비 지급 불가(단, 증빙자료 제출 시 원거리 교통비(고속 시외버스, 기차 등)는 가능)</li> <li>※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(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)</li> <li>※ 코로나19 관련, 방문수업 강사료는 집합교육 기준으로 책정한 강사료 이하로 지급</li> <li>※ 지출증빙: 강의확인서, 강사자격 확인자료, 강의자료, 강의사진 등</li> <li>※ 단체(참여단체 포함)와 지부·지회의 대표,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 불가</li> <li>※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,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(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)</li> <li>- 건당 12.5만원 이하의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(원천징수 면제)</li> </ul>				